

선 람	기 관 의 장

포 항 시 보

제 798호 2010. 9. 28(화)

◀ 조 려 ▶

-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12호) 2
-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013호) 13
-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14호)..... 17

◀ 입법예고 ▶

- 포항시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제2010-869호) 33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82호) 36
- 구룡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제2010-83호) 39

회 람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9월 28일

포항시 조례 제 1012호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함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함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함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함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함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함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함
10.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함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한다.
4. 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시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시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시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포항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 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경상북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

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본부장, 국장급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인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3.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9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시, 기업 및 시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 한다.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시장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2010. 4.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 13. 공포, 2010. 4.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 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시는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마.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작성

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사.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

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안 제23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 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9월 28일

포항시 조례 제 1013호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포항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문화원(이하 ” 문화원 “이라 한다)” 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3.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별 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육성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외의 배치 여부
2. 포항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운영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포항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서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의 시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 등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문화원의 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마.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바.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토록 함 (안 제12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9월 28일

포항시 조례 제 1014호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 하여 연1회 발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을 “100원권, 15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45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를 “경상북도” 로 “전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별지 제9호서식” 을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100분이 5” 를 “100분의 5” 로 “계기사용시” 를 “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시” 로 한다.

제21조 제목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 을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무인발급기 “를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으로 “별지 제11호 서식” 을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 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이 포항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m)

2. 직 업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함

1. 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위치 :
(에서 m)

2. 직 업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 청구서

구분 권종	재 고 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고 (사유)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150원							
200원							
300원							
400원							
45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원부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시금고보관)	No. 수입증지대금영수필통지서 (시송부용)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영수증 (청구인)																																																																																																																																																																																																																																							
<table border="1"> <tr> <td>판매인</td> <td>주소</td> <td>성명</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판매인	주소	성명				<table border="1"> <tr> <td>판매인</td> <td>주소</td> <td>성명</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판매인	주소	성명				<table border="1"> <tr> <td>판매인</td> <td>주소</td> <td>성명</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판매인	주소	성명				<table border="1"> <tr> <td>판매인</td> <td>주소</td> <td>성명</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판매인	주소	성명																																																																																																																																																																																																																		
판매인	주소	성명																																																																																																																																																																																																																																								
판매인	주소	성명																																																																																																																																																																																																																																								
판매인	주소	성명																																																																																																																																																																																																																																								
판매인	주소	성명																																																																																																																																																																																																																																								
<table border="1"> <tr> <td>액면권</td> <td>매 수</td> <td>금 액</td> </tr> <tr><td>10,000원</td><td> </td><td> </td></tr> <tr><td>5,000원</td><td> </td><td> </td></tr> <tr><td>1,000원</td><td> </td><td> </td></tr> <tr><td>700원</td><td> </td><td> </td></tr> <tr><td>500원</td><td> </td><td> </td></tr> <tr><td>450원</td><td> </td><td> </td></tr> <tr><td>400원</td><td> </td><td> </td></tr> <tr><td>300원</td><td> </td><td> </td></tr> <tr><td>200원</td><td> </td><td> </td></tr> <tr><td>150원</td><td> </td><td> </td></tr> <tr><td>100원</td><td> </td><td> </td></tr> <tr><td>60원</td><td> </td><td> </td></tr> <tr><td>50원</td><td> </td><td> </td></tr> <tr><td>40원</td><td> </td><td> </td></tr> <tr><td>10원</td><td> </td><td> </td></tr> <tr><td>계</td><td> </td><td> </td></tr> <tr><td>할인금액</td><td> </td><td> </td></tr> <tr><td>차인금액</td><td> </td><td> </td></tr> <tr><td>발행년월일</td><td> </td><td> </td></tr> </table>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행년월일			<table border="1"> <tr> <td>액면권</td> <td>매 수</td> <td>금 액</td> </tr> <tr><td>10,000원</td><td> </td><td> </td></tr> <tr><td>5,000원</td><td> </td><td> </td></tr> <tr><td>1,000원</td><td> </td><td> </td></tr> <tr><td>700원</td><td> </td><td> </td></tr> <tr><td>500원</td><td> </td><td> </td></tr> <tr><td>450원</td><td> </td><td> </td></tr> <tr><td>400원</td><td> </td><td> </td></tr> <tr><td>300원</td><td> </td><td> </td></tr> <tr><td>200원</td><td> </td><td> </td></tr> <tr><td>150원</td><td> </td><td> </td></tr> <tr><td>100원</td><td> </td><td> </td></tr> <tr><td>60원</td><td> </td><td> </td></tr> <tr><td>50원</td><td> </td><td> </td></tr> <tr><td>40원</td><td> </td><td> </td></tr> <tr><td>10원</td><td> </td><td> </td></tr> <tr><td>계</td><td> </td><td> </td></tr> <tr><td>할인금액</td><td> </td><td> </td></tr> <tr><td>차인금액</td><td> </td><td> </td></tr> </table>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table border="1"> <tr> <td>액면권</td> <td>매 수</td> <td>금 액</td> </tr> <tr><td>10,000원</td><td> </td><td> </td></tr> <tr><td>5,000원</td><td> </td><td> </td></tr> <tr><td>1,000원</td><td> </td><td> </td></tr> <tr><td>700원</td><td> </td><td> </td></tr> <tr><td>500원</td><td> </td><td> </td></tr> <tr><td>450원</td><td> </td><td> </td></tr> <tr><td>400원</td><td> </td><td> </td></tr> <tr><td>300원</td><td> </td><td> </td></tr> <tr><td>200원</td><td> </td><td> </td></tr> <tr><td>150원</td><td> </td><td> </td></tr> <tr><td>100원</td><td> </td><td> </td></tr> <tr><td>60원</td><td> </td><td> </td></tr> <tr><td>50원</td><td> </td><td> </td></tr> <tr><td>40원</td><td> </td><td> </td></tr> <tr><td>10원</td><td> </td><td> </td></tr> <tr><td>계</td><td> </td><td> </td></tr> <tr><td>할인금액</td><td> </td><td> </td></tr> <tr><td>차인금액</td><td> </td><td> </td></tr> </table>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table border="1"> <tr> <td>액면권</td> <td>매 수</td> <td>금 액</td> </tr> <tr><td>10,000원</td><td> </td><td> </td></tr> <tr><td>5,000원</td><td> </td><td> </td></tr> <tr><td>1,000원</td><td> </td><td> </td></tr> <tr><td>700원</td><td> </td><td> </td></tr> <tr><td>500원</td><td> </td><td> </td></tr> <tr><td>450원</td><td> </td><td> </td></tr> <tr><td>400원</td><td> </td><td> </td></tr> <tr><td>300원</td><td> </td><td> </td></tr> <tr><td>200원</td><td> </td><td> </td></tr> <tr><td>150원</td><td> </td><td> </td></tr> <tr><td>100원</td><td> </td><td> </td></tr> <tr><td>60원</td><td> </td><td> </td></tr> <tr><td>50원</td><td> </td><td> </td></tr> <tr><td>40원</td><td> </td><td> </td></tr> <tr><td>10원</td><td> </td><td> </td></tr> <tr><td>계</td><td> </td><td> </td></tr> <tr><td>할인금액</td><td> </td><td> </td></tr> <tr><td>차인금액</td><td> </td><td> </td></tr> </table>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행년월일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5,000원																																																																																																																																																																																																																																										
1,000원																																																																																																																																																																																																																																										
700원																																																																																																																																																																																																																																										
500원																																																																																																																																																																																																																																										
450원																																																																																																																																																																																																																																										
400원																																																																																																																																																																																																																																										
300원																																																																																																																																																																																																																																										
200원																																																																																																																																																																																																																																										
150원																																																																																																																																																																																																																																										
100원																																																																																																																																																																																																																																										
60원																																																																																																																																																																																																																																										
50원																																																																																																																																																																																																																																										
40원																																																																																																																																																																																																																																										
10원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현금 수납후 지급(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20 수입금 출납원 포항시금고 귀하	상기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포 항 시 금 고 (인) 과장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포 항 시 금 고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table border="1"> <tr> <td>담당자</td> <td>담당</td> <td>과장</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담당자	담당	과장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1호 서식]

No. 수입증지불출원부			No. 수입증지불출증		
판매인	주소		판매인	주소	
	성명			성명	
액면권	매 수	금 액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700원			700원		
500원			500원		
450원			450원		
400원			400원		
300원			300원		
200원			200원		
150원			150원		
100원			100원		
60원			60원		
50원			50원		
40원			40원		
10원			10원		
계			계		
할인금액			할인금액		
차인금액			차인금액		
발행년월일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수 입 금 출 납 원 포항시금고 귀하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수입증지판매대장

구 분		매														판						매											
원 종	년 월 일	입														매						판						매					
		계(원)	10	40	50	60	100	150	200	300	400	450	500	700	1,000	5,000	10,000	계(원)	10	40	50	60	100	150									
						</																											

								잔														고					
200	300	400	450	500	700	1,000	5,000	10,000	계(원)	10	40	50	60	100	150	200	300	400	450	500	700	1,000	5,000	10,000			

297mm×21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 신고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 정 인	수입증지 판매소 위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유발생 년월일		년 월 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년월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업무담당	과·읍면 동장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무인발급기번호 :

년월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업무담당	과·읍면 동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시스템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llegible]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생략) ② <u>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u> ③ (생략) 제5조(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 ① ~ ② (생략) ③ <u>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u>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u>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② <u>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u>	제4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u>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② <u>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증지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전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 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12조(판매인의 판매폐지)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100원권, 15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45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상북도----- -----제2항-----.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매인의 판매폐지) ----- ----- -----별지 제6호 서식----- -----.

현행	개정
제20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u>계기사용시</u>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u>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u>) ① (생략) ②<u>계기사용에</u>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u>별지 제10호서식</u>에 의하여 일일 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③<u>무인발급기</u>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u>별지 제11호서식</u>에 의하여 일일 결산 하여야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u>계기 및 무인발급기</u>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u>판매수익금 관리</u>) ① (생략) ②<u>전항의</u> <u>규정에</u> 의한 회원간의 후생 복리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인 수수료) ----- ----- 100분의 5 ----- ----- <u>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시</u>----- -. 제21조(<u>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u>) ① (현행과 같음) ②----- -----<u>별지 제7호서식</u>----- ----- ----- ③<u>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 ----- <u>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u>----- ----- ----- ④<u>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u>의 ----- ----- ----- -----. 제22조(<u>판매수익금 관리</u>) ① (생략) ②<u>제1항에</u> 따른----- ----- ----- -----.

1. 개정이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 나.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 400원권, 450원권, 700원권을 추가(안 제6조)
- 다.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869호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10. 28.

포항시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문화관광축제의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여 민간주도로 지역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가 위탁하는 축제행사 범위와 관장사무를 규정(안 제2조)
- 위원장 및 위원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안 제3조)

- 축제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안 제8조)
- 산하에 사무국을 구성(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10.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전화 270-2251, FAX 270-2250, E-mail : j7570@korea.kr) 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축제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총괄한다.

1. 포항 국제불빛축제
2.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3. 그 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행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임원 선출
2. 소관 축제별 행사계획 심의 확정
3. 축제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 하고 포항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최초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축제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제6조(사무국) ①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행사 및 운영경비) 위원회의 행사 및 운영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 위원회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제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8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9월 24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 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학교 세부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포항공과 대학교	대학교	지곡동 166-20 일원	1,671,661		1,671,661	건 고 제357호 (1985.8.14)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89,456		490,209	
변경	가	교사지구	효자동 519답 일원	208,280	증)753	209,033	
기정	나	복지시설지구	지곡동 151-2전 일원	20,134	-	20,134	
기정	다	기숙사지구	지곡동 280대 일원	119,014	-	119,014	
변경	라	체육, 기타시설지구	지곡동 144임 일원	108,826		108,826	
기정	마	교수숙소지구	지곡동 381-2전 일원	29,374	-	29,374	
기정	바	파워플랜트, 창고	지곡동 294전 일원	3,828	-	3,828	
기정	사	공학실험연구동지구	지곡동 717답 일원	45,564	-	45,564	
기정	아	방사가속기지구	지곡동 768-1임 일원	315,020	-	315,020	
기정	자	오수처리지구	지곡동 134-2답 일원	13,215	감)753	12,462	
기정	차	녹지	지곡동 산197임 일원	760,444	-	760,44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카	도로	지곡동 125-2도 일원	28,542		28,542	
기정	타	국제관지구	지곡동 산260-1임 일원	19,420	-	19,420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가	세부시설 (교사지구)	A=208,280㎡ → 209,033㎡ (증 753㎡)	지능로봇 연구소 실험동 신축을 위한 증가
나	세부시설 (오수처리지구)	A=13,215㎡ → 12,462㎡ (증 753㎡)	지능로봇 연구소 실험동 신축을 위한 감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제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83호

구룡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룡포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0-81호)하였으나, 토지조서가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9월 28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변경없음)
8.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9.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지도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등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산업단지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계				1,842,743	994,655						
1	병포리	376	잡	1,273	1,273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2	병포리	376 - 1	잡	31,527	31,020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3	병포리	378	대	889	889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4	병포리	379	답	582	582	구룡포읍 병포리 315	황보길자				
5	병포리	380	임	162	162	하정리	하 유 만				미등기
6	병포리	381	답	380	380	구룡포읍 하정리 185	김 옥 희				
7	병포리	382	임	139	139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8	병포리	383	임	79	79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9	병포리	384	임	238	238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10	병포리	385	임	109	109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11	병포리	386	임	119	119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12	병포리	387	답	972	972	대구수성구황금동 759-2 유창프레스빌 303	백 경 진				
13	병포리	388	천	783	783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 성 열				
14	병포리	389	답	172	172	구룡포읍 병포리 36	양 원 수	서울강남구역삼동814	동작세무서 한마음금8(9)	압류 가압류	
15	병포리	390	답	175	175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1	이 후 곤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	포항세무서, 포항시 영일수산업 협동조합	압류 가압류	
16	병포리	391	답	387	387	대구 수성구 황금동 759-2 유창프레스빌303	백 경 진				

번 호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내 용	
17	병포리	449	답	1,269	1,269	구룡포읍병포리316	김 창 준				
18	병포리	469 - 1	천	45,115	682		국(국토 해양부)				
19	병포리	495	구	2,574	2,574		국(농림 수산부)				
20	병포리	495 - 1	구	560	560		국(기획 재정부)				
21	병포리	산100	임	157,699	17,428	북구우현동538 신동아베르디2차 103/1605	김준일 외 73인				
22	병포리	산100 - 2	임	9,917	9,765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23	병포리	산103 - 1	임	30,364	26,100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24	병포리	산103 - 2	임	13,297	4,136	북구장성동1343 창포정구타운103동 505호	손 광 호 외 1인	북구 대흥동 595-162	대흥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근 저 당 권2 (오영만)	
25	병포리	산103 - 3	임	6,000	118	대구시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 동1001호	위 성 열				
26	병포리	산120	임	40,831	6,990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27	병포리	산121 - 1	임	260,479	85,926	구룡포읍 놀태리 19	이옥의 외 8인				
28	병포리	산121 - 3	임	620,900	446,540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29	병포리	산121 - 5	임	518	518	구룡포읍 구룡포리 735	김 태 조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포항시남구청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압류 가압류	
30	병포리	산121 - 6	임	633	633	구룡포읍 구룡포리 735	김 태 조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가압류	
31	병포리	산121 - 7	임	606	606	구룡포읍 구룡포리 735	김 태 조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가압류	
32	병포리	산121 - 8	임	5,224	5,224	북구 용흥동 623-12	나주정씨 문화파 종친회				
33	병포리	산121 - 13	임	525	525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34	병포리	산123	임	3,967	3,967	구룡포읍 하정리185	진주하씨 하정2동 문중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35	병포리	산124	임	496	496	구룡포읍 장길리 205	이 천 식 외 3인				
36	병포리	산125	임	73,962	73,962	서울 성북구 성북동 145-125	정 도 원 정 대 현				
37	병포리	산125 - 1	임	58,931	58,931	대구 서구 내당동 463-5 광장타운105동 803호	백 경 진				
38	병포리	산126	임	130,140	85,948	대구수성구상동72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39	병포리	산126 - 1	임	48,777	48,777	대구수성구상동72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 성 열				
40	병포리	산156	구	4,662	4,662		국 (국토 해양부)				
41	하정리	762	답	866	310	구룡포읍 구룡포리 389	이 만 조				
42	하정리	763	답	337	160	북구황호동409-1해맞이그린빌 107/1201	박 광 수				
43	하정리	764	답	225	225	북구황호동409-1해맞이그린빌 107/1201	박 광 수				
44	하정리	765	임	241	241	구룡포읍 하정리 324	배 동 근				
45	하정리	816	도	1,081	280		국(국토 해양부)				
46	하정리	산174	임	103,934	3,930	구룡포읍 하정리 588	나지현 외 5인				
47	하정리	산196	임	73,388	26,475	구룡포읍 하정리 185	진주하씨 하정2동 문중				
48	하정리	산199	임	9,917	9,917	구룡포읍 하정리 185	진주하씨 하정2동 문중				
49	하정리	산200	임	198	198	북구 장성동	전 경 갑				
50	하정리	산201	임	94,413	26,392	구룡포읍 하정리 185	진주하씨 하정2동 문중				
51	하정리	산202	임	2,380	2,380		국(산림청)				
52	하정리	산220	구	331	331		국(국토 해양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구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리·동	지번			합계	교통 광장	대로 3-28	소로 1-2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계				205,281	7,439	6,822	8,743	1,874						
1	병포리	364 - 1	전	159	1	-	-	1	구룡포읍 병포리 311	김용수				
2	병포리	369	전	358	32	-	-	32	구룡포읍 병포리 356-1	순홍안씨 나곡파 안종중회				
3	병포리	369 - 1	전	574	58	-	-	58	대구수성구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성열				
4	병포리	371 - 1	도	101	23	-	-	23	대구수성구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성열				
5	병포리	376 - 1	잡	31,527	24	-	-	24	대구수성구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 102/1001	위성열				
6	병포리	457 - 4	답	413	307	307	-	-		국(국토 해양부)				
7	병포리	469 - 1	천	45,115	541	-	-	541		국(국토 해양부)				
8	병포리	469 - 12	천	2,260	128	-	-	128		국(국토 해양부)				
9	병포리	469 - 16	천	2,196	207	-	-	207		포항시				
10	병포리	469 - 60	천	478	33	-	-	33		국(국토 해양부)				
11	병포리	485	도	955	33	-	-	33		국(국토 해양부)				
12	병포리	487	도	866	4	-	-	4		국(국토 해양부)				
13	병포리	491	도	258	170	-	-	170		국(국토 해양부)				
14	병포리	산84 - 2	임	11,677	2,526	2,526	-	-	북구 득량동 303 이동삼성아파트 109동1603호	이준희 외 3인				
15	병포리	산84 - 6	임	1,414	85	85	-	-		국(국토 해양부)				
16	병포리	산93	임	231	231	231	-	-		국(국토 해양부)				

번 호	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리·동	지 번			합 계	교통 광장	대로 3-28	소로 1-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7	병포리	산93 - 1	임	4,926	4,278	4,278	-	-		국(국토 해양부)				
18	병포리	산95	임	6,952	4,735	4,735	-	-	북구 특량동 107-2 신흥빌라 501	김 순 란	북 구 두 호 동 753 우방신천지 타운103/1105	민창호	근 저 당권	
19	병포리	산95 - 1	임	6,403	5,540	5,540	-	-		국(국토 해양부)				
20	병포리	산96	임	20,383	16	16	-	-	부산 동구 범일 동 1435-523	정이운 외 2인				
21	병포리	산96 - 2	임	13,594	1,571	1,571	-	-		국(국토 해양부)				
22	병포리	산97	임	22,975	114	114	-	-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47	정일화 외 1인				
23	병포리	산97 - 1	임	33	33	33	-	-		국(국토 해양부)				
24	병포리	산98 - 1	임	21,297	837	837	-	-	울산 남구 옥동 129-5 동 서 파 크 맨 셴 203	김민정 외 24인				
25	병포리	산98 - 3	임	3,523	3,505	3,505	-	-		국(국토 해양부)				
26	병포리	산98 - 4	임	3,307	143	143	-	-	북구 죽도동 628-15	(주)상원 에이스 외 3인				
27	병포리	산98 - 8	임	3,306	276	276	-	-	북구 죽도동 628-15	(주)상원 에이스 외 1인				
28	병포리	산100	임	157,699	9,367	624	8,743	-	북구 우현동 538 신 동 아 베 르 디 2차 103/1605	김준일 외 73인				
29	병포리	산100 - 1	임	2,311	1,487	1,487	-	-		국(국토 해양부)				
30	병포리	산126	임	130,140	36	-	-	36	대구수성구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1 02/1001	위 성 열				
31	병포리	산126 - 3	임	155	9	-	-	9	대구수성구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1 02/1001	위 성 열				
32	병포리	산126 - 4	도	139	139	-	-	139	대구수성구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1 02/1001	위 성 열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리·동	지번			합계	교통 광장	대로 3-28	소로 1-2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33	병포리	산127-1	임	312	290	-	-	290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성열 김화옥				
34	병포리	산127-2	도	187	145	-	-	145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성열				
35	병포리	산127-5	임	2,460	1	-	-	1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06-2	이상자 외 6인				
36	병포리	산165	도	3,703	514	514	-	-		국(국토 해양부)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번호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1	병포리	378	대	주택	기와, 벽돌	㎡	79.4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성열	
				주택	기와, 벽돌	㎡	22.5			
2	병포리	산121-3	임	묘지		기	4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성열	
3	병포리	산125	임	묘지		기	4	서울 성북구 성북동 145-125	정도원, 정대현	
4	병포리	산125-1	임	묘지		기	1	대구서구내당동463-5 광장타운105동803호	백경진	
5	병포리	산126	임	묘지		기	1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성열	
6	병포리	산126-1	임	묘지		기	1	대구수성구상동72 정화우방팔레스102/1001	위성열	
7	하정리	산196	임	묘지		기	2	구룡포읍 하정리 185	진주하씨 하정2동문중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